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26호 2009. 4. 28(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입법예고 ▶

-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567호) 2
- 포항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09-568호) 9

◀ 공 고 ▶

-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대행 사업자 모집 공고(제2009-572호)..... 22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6

회								
람								

입법예고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4월 23일

포항시 공고 제 2009 - 567호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08.12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 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자치행정과장, ☎ 054-270-2083, FAX 054-270-208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를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2항중 “제11조제1호” 를 “제11조” 로 하고 제3항중 “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를 “당연히 복직된다”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

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 신 설 〉</u></p> <p><u>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 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u> 2. <u>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u> <p><u>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u></p>	<p><u>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 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 용할 수 있다.</u></p> <p><u>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u> ② <u>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 <p><u>제11조의2(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생략)</p> <p>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u>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u></p> <p>제12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p> <p>① <u>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u></p>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1조</u>-----</p> <p>-----</p> <p>-----</p> <p>-----</p> <p>-----</p> <p>-----</p> <p>③ -----</p> <p>-----</p> <p><u>-당연히 복직된다.</u></p>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p>

포항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4월 23 일

포항시 공고 제2009-568호

포항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시행('09. 1. 1)됨에 따라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포항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문화(안 제3조 및 별표 1)

※ 예외규정 : 시장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포항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에 명시된 내용 정리·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 방법
- 정년잔여기간 계산 방법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 기준
-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직퇴직원, 경과조치 등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장 (참조 : 자치 행정과장, ☎ 054-270-2083, FAX 054-270-2080)에게 제출하
 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 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 소 속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한 글		⑥ 주민등록번호			
	⑤ 성명 한 자		⑦ 주 소	□ □ □ - □ □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정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포 향 시 장 직인

포 향 시 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 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㉞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㉟ ~ ㉑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㉒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㉓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8. ㉔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 1. 소 속 :
- 2. 직 위 :
- 3. 직(계)급 :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포 함 시 장 직인

포 함 시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함 시 장 귀 하

공 고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행사의 종합기획 및 연출, 홍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사대행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4월 일

포항시 공고 제2009-572호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대행 사업자 모집 공고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 기 간 : 2009. 7. 25 ~ 7. 26(2일간)
- ※ 전야제 : 2009. 7. 24(금) 19:00~21:00
- 장 소 : 북부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시내 일원

- 주 최 : 포항시(연화행사 주관:POSCO)
- 사 업 비 : 440백만원(부가세 포함. 단, 예산 및 프로그램 대행 범위는 협상 시 포항시에서 별도 제시)

2. 참가자격

-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이벤트업이나 행사 대행업 또는 광고 대행업으로 설립된 법인, 방송사 포함
 - ※ 상기 목적의 법인설립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이며, 공모업체 결정때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한 단일 행사 3억원 이상의 축제,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 기 간 : 2009. 4. 23(목) ~ 5. 4(월)
-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등

4. 대행사업자 응모접수

- 접수기한 : 2009. 5. 4(월) 18:00까지 도착분
- 접 수 처 : 포항시청 문화관광과(축제관리담당)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가능하면 직접 접수 요망)
- 제출서류
 - 1)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사업계획 10부
 - 2) 사업비에 대한 운용계획(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
 - 3) 행사실적 증명서
 - 4)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등본) 1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007~2009년)
 - 7) PT자료 CD 1부(제안 설명회 시 발표용 : 10분 이내 분량)

5. 사업계획 수립시 착안사항

- 지역 특성인 바다, 항만, 불과 빛 등을 주제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꿈과 희망을 소재화
- 해안과 강변 등 2개 행사장에 대한 축제프로그램 구성
 - 첫째 날은 ‘국제뮤직불꽃쇼 개막식 및 축하행사’ 가 주요 테마
 - 둘째 날은 ‘시 승격 60주년 기념식과 경축행사’ 가 주요 테마
- 시 승격 60주년 경축 분위기 조성
 - 중앙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인기 한류스타 섭외 정도에 따른 가점 부여
- 전통문화와 지역예술이 조화된 거리 퍼레이드 연출계획 반영
- 기타 축제행사 운영계획(안전, 경비, 소방, 질서대책 등) 등

6.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09. 5. 8(금) 15:00 예정(당일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방법 : 1차 서류 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질의/응답 병행
 - ※ 응모 신청 업체별로 심사자료 별도 준비

7. 대행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대행사 선정 및 결과 발표
 - 우리시 심사기준에 의거 적정 심사후 심사 당일 현장에서 최우수 기획안을 선정, 대행사 선정시 우선 협상권 부여
 - 우선 협상권이 부여된 업체가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되거나 여타 사정으로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업체로 변경하여 협상을 실시함
-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포항시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대행금액 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함.
- 공모안 변경
 - 선정된 기획안의 제안 내용은 우선 협상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음

8. 대행사업자 선정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포항시 문화관광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단 우편 및 택배 접수는 2009. 5. 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미 접수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응모업체의 책임으로 함
-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교환·변경·반환할 수 없으며, 제출된 기획안의 제반 권리는 포항시에 귀속한다.
-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회 등에 불참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모든 사항은 응모자(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문화관광과 축제관리담당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54-270-2252~4)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공 표 일 : 2009년 4월 22일
- 채 수 일 : 2009년 4월 6일
- 검사기관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먹는물검사담당
 - 원 수 (하천수 및 호소수) : 9개소
 - 정 수 : 8개소
 - 노후지역 수도꼭지 : 8개소
- 검사항목
 - 원 수 : 환경기준(하천수, 호소수) 7개 항목
 - 정 수 : 먹는물수질기준 51개 항목
 -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10개 항목
- 검사결과
 - 정 수, 노후지역 수도꼭지 :
 - 전항목에 대해 모두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원 수 :

구 분 (상수원)	유 강	공 단	제 2	백 전	갈 평	병 포	양 덕	약 성	비고
	안계댐수		형산강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	진전지수	눌태지	임하댐수	곡강천 복류수	
등 급	Ⅱ (약간 좋음)		I b (좋음)	I a (매우 좋음)	I a (매우 좋음)	Ⅲ (보통)	I b (좋음)	I a (매우 좋음)	

▷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기준(BOD/COD기준)임

2009년 4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4. 22.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채수일자		2009년 4월 6일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검사항목(기준)	정수장·상수원·공급지역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태지	곡강천복류수
		동지역 전역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생물	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불소 (1.5mg/l 이하)	0.2	불검출	불검출	0.2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산성질소 (10mg/l 이하)	1.0	0.5	0.7	1.3	1.5	0.2	0.4	1.0
	보론(B) (1.0mg/l 이하)	0.043	0.029	0.035	0.054	0.054	불검출	0.022	0.034
	기타 7개항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타 15개 항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유리잔류염소 (4.0mg/l 이하)	0.54	0.30	0.64	0.56	0.60	0.50	0.26	0.73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이하)	0.0534	0.0327	0.0546	0.0261	0.0434	0.0301	0.0332	0.0374
	클로로포름 (0.08mg/l 이하)	0.02591	0.02537	0.04436	0.00933	0.01055	0.02158	0.01355	0.02504
	기타 2개 항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심미적 영향물질	수소이온농도 (5.8~8.5)	7.3	7.5	7.6	7.5	7.4	7.1	7.0	7.1
	경도 (300mg/l 이하)	115.2	74.1	93.8	122.0	135.7	34.0	53.1	97.8
	동(Cu) (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기타 13개 항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검사항목(기준)	수도꼭지 지역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2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리잔류염소 (4.0mg/l 이하)	0.33	0.29	0.36	0.40	0.58	0.49	0.20	0.71
동 (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아연 (3mg/l 이하)	0.007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57	불검출	불검출	0.0317
염소이온 (250mg/l 이하)	40	11	11	55	55	12	40	15
철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망간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232	불검출	불검출	0.0059	불검출
판 정	상기 정수 및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관 리 책 임 자	상수도사업소장 김 홍 식							

-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